

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·운영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설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78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8. 4.

발의자 : 설훈·강병원·기동민

김병기·김홍걸·민홍철

안규백·안민석·정태호

홍영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5년 단위로 군 책임운영기관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연도별 운영지침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이러한 계획을 공표하고 있지 않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국방부장관이 중기관리계획 및 운영지침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6조의2제5항 신설).

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·운영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
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6조의2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국방부장관은 중기관리계획 및 운영지침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. 다만,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계획 공표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중기관리계획 및 운영지침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의2(중기관리계획의 등) ① ~ ④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6조의2(중기관리계획의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<u>⑤ 국방부장관은 중기관리계획 및 운영지침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. 다 만,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 은 공표하지 아니한다.</u> <u>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</u>
⑤ (생 략)	